



“산업폐자원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한국 산업 폐 자원 공 제 조 합
 Korea Industrial Waste-Resources Mutual-aid Association



수 신 전 조합원사 및 매립협회 회원사 대표이사[대표이사 메일송부 병행문서]
 참 조 시설 관리담당
 제 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보험료부담 경감을 위하여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신청받고 있습니다.
3. 이에 조합원사 및 매립회원사에서는 신청 자격 등을 검토하여 대상이 되는 경우 '16.11.11(금) 17시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하여 보험료 일부를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안내」 알림은 조합홈페이지 (자료광장-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붙 임 : 1.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안내」 공고문 1부.
 2.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서 1부.
 3. 환경책임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4. 개인정보처리 및 정보제공동의서 1부. 끝.

한국 산업 폐 자원 공 제 조 합 이 사 장



담당 오 은 석 팀장 한 인 성 사무국장 장 기 석 상근부이사장 진 원 기 이 사 장 박 무 웅
 협조자
 시행 한공조 2016 - 462호 (2016. 11. 1) 접수
 우 07573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6 11층(등촌동, 우리벤처타운)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 www.kiwrma.or.kr
 전화 02-718-7900 전송 02-718-7171 / kiwrma@kiwrma.or.kr /비공개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안내 공고문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보험료부담 경감을 위하여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016. 11.11(금) 17:00까지 우리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24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신청자격

- 최근 3년 평균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대비 환경책임보험료 비중이 0.3%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소기업 중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
 -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중소기업
 -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안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의 0.3%를 초과하는 보험료의 50~70% 이내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 신청방법

-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서 작성·제출
 - 신청서 작성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 및 환경책임보험통합 관리시스템(www.eilkorea.or.kr) 공지 내용을 참고
 - ※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거짓이 있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기간 : 2016. 10. 24(월) ~ 2016. 11. 11(금) 17:00까지
 - ※ 2016년도 지원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선착순으로 지원
- 접수 및 문의처
 -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0336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구제실(중소기업 지원 담당)
 - 전 화 : (02) 380-0660(연결 후 1번), Fax : (02) 380-0688
 - E-mail : retree1013@keiti.re.kr

안 내 서

□ 개요

1. 목적

- 환경·안전 관리가 우수한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중소기업의 재정부담 경감을 통해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유도
- 환경책임보험 보험료가 최근 3년 평균매출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인 중소기업 및 영세소기업 보험료 일부 지원

2. 대상

- 최근 3년 평균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대비 환경책임보험료 비중이 0.3%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소기업 중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
-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중소기업
-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안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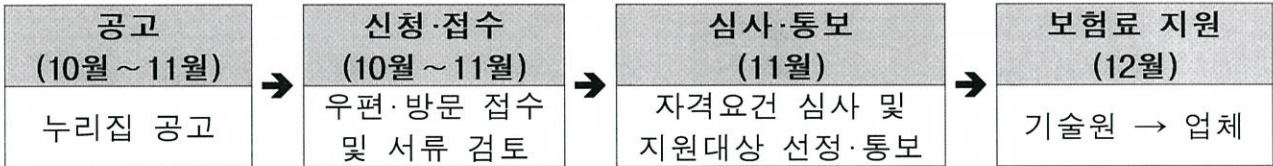
3. 내용

- (지원한도)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최대 3년
※ 최대한도(3천만원)는 지원예산 상황에 따라 소폭 조정 될 수 있음
- (지원방식) 지원 대상 선정 후 업체(또는 대표자) 통장으로 송금(기술원→업체)
- (지원기준) 평균매출액 0.3%를 초과하는 보험료의 50~70% 이내
※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소기업은 보험료의 50% 이내

해당업체	지원기준	
	구 분	지원율
보험료가 평균매출액 0.3% 이상	0.3%~0.5% 미만 구간	평균매출액 0.3%를 초과하는 보험료의 50% 이내
	0.5% 이상 구간	평균매출액 0.5%를 초과하는 보험료의 70% 이내
평균매출액 1억원 미만	전체	보험료의 50% 이내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절차)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후 서류 검토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 접수현황(담당자 이메일 및 전화/문자 통보), 심사결과(우편, 이메일, Fax 택 1)

□ 제출 서류

1.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중소기업확인서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확인
4. 최근 3년 평균매출액 증명서류(표준재무제표증명원)
 - ※ 관할지역 세무서 또는 민원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
5. 해당 시설의 인·허가 증명 서류 사본
6. 환경오염피해 및 행정처분 사실 여부 확인 문서
 - ※ 해당 시설 인·허가 기관의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사실 확인 공문. 다만, 기간 내 해당 공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지원 대상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제출 가능
7. 환경책임보험 증권 사본
8. 개인정보 처리 및 정보제공 동의서
9. 업체(또는 대표자) 명의 지원금 수령계좌 사본
 - ※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거짓이 있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음

[접수 및 문의처]

-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0336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구제실
(중소기업 지원 담당)
- 전 화 : (02) 380-0660 (연결 후 1번), Fax : (02) 380-0688
- E-mail : retree1013@keiti.re.kr
- 누리집 : www.keiti.re.kr, www.eilkorea.or.kr 게시판

1.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 이란?

-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중 환경·안전 관리가 우수한 기업의 재정 부담 경감을 통해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납부한 보험료가 최근 3년 평균매출액 대비 0.3%이상인 중소기업 및 영세소기업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 신청대상은?

- 신청대상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이며,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이 0.3%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소기업 중 환경·안전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을 대상으로 합니다.
- * 최근 3년 이내 환경오염피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환경·안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중소기업

3. 2016년도 지원예산 및 업체당 지원 규모는?

- 2016년도 총 지원예산은 5억 2,300만원입니다.
- 업체당 지원한도는 3천만원 이내로,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의 0.3% 초과하는 보험료의 50~70% 이내로 지원하며, 평균매출액 1억원 미만인 소기업의 경우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text{보험료}/\text{평균매출액}]=0.8\% \text{ 인 경우,} \\ \{ (0.8\% - 0.5\%) \times \text{매출액} \times 70\% \} + \{ (0.5\% - 0.3\%) \times \text{매출액} \times 50\% \} = \text{지원금(이내)}$$

- * 보험료 800만원, 매출액 10억원 (0.8%)
 $(300\text{만원} \times 70\%) + (200\text{만원} \times 50\%) = 310\text{만원}$ 이내 지원

4. 동일한 법인에 여러 사업장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 사업자(법인) 단위로 지원하기 때문에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다만, 동일한 사업자의 결산(별도재무제표)된 3개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5. 지원 사업의 기대효과는?

-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 경감과 환경·안전 관리 유인을 통해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 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대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로서 같은 영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회사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 삭제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별첨 1)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업 체	업체명 (법인·단체명)					설립연월일	
	대표자 성명					사업자(법인·단체) 등록번호	
	주소(소재지)						
	표준산업분류 (코드)					기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중기업 <input type="checkbox"/> 소기업
	전화번호					FAX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부서명(직위)					E-mail	
보험 가입 내역	시설종류 (해당시설 √)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유해화학	해양
	보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보험료(원)						
평균 매출액	백만원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16-129호(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안내 공고)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의 보험료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0000 주식회사 대표 0 0 0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중소기업확인서(sminfo.smba.go.kr)
3. 최근 3년 매출액 증명서류(표준재무제표증명원)
4. 해당 시설의 인·허가 증명 서류
5. 환경오염피해 및 행정처분 사실 여부 확인 문서
6. 환경책임보험 증권 사본
7. 개인정보 처리 및 정보제공 동의서
8. 업체(또는 대표자) 명의 지원금 수령계좌 사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
개인정보 처리 및 정보제공 동의서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 안내 및 사실 확인 등의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②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 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 소속부서, 직위)

③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이 상실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됩니다.

④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동의합니까?

개인 정보	(휴대)전화번호, e-mail, 직장명, 부서, 직위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	---

2. 환경책임보험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귀사는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관련된 보험사 제출 자료(보험료 산정 기초자료, 사고현황, 손해사정자료 등)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환경부에서 사업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